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은 평 구

결산검사 의견서

서울시 은평구청장 귀하

2018년 4월 27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은평구 의회로부터 은평구 2017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8년 3월 29일부터 2018년 4월 27일까지(3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17회계연도 은평구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은평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은평구가 작성하여 제출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조수학

검사위원 양대석

검사위원 조강현

검사위원 김세택



【 목 차 】

I .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세입·세출 결산	1
2. 기금의 결산	9
3. 재무제표의 결산	10
4. 성과보고서	12
5.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4

II .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1. 세입결산 분야	18
2. 세출결산 분야	22
3. 재무제표 분야	27
4. 성과보고 분야	28

III . 전년도 지적(권고)사항 조치 내용	35
--------------------------	-------	----

I. 결산검사 총괄 현황

I.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세입·세출 결산

(1) 총괄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 (C =A-B)
합 계	725,261,698	745,893,045	600,483,166	145,409,879
일 반 회 계	708,287,192	728,286,106	593,290,859	134,995,247
특 별 회 계	16,974,506	17,606,939	7,192,307	10,414,632

(단위 : 천원)

회 계 별	현년도 채무상환	이 월 액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합 계	0	25,718,899	28,862,762	1,000,000	9,642,270	80,185,948
일 반 회 계	0	25,718,899	28,862,762	1,000,000	9,626,510	69,787,076
특 별 회 계	0	0	0	0	15,760	10,398,872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745,893,045천원으로 예산액 725,261,698천원보다 20,631,347천원이 더 수납 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80%인 600,483,166천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45,409,879천원임.

이 중 명시이월비 25,718,899천원, 사고이월비 28,862,762천원 및 계속비 1,000,000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9,642,270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0,185,948천원이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음.

(2) 일반회계

가. 세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결 산 액	708,287,192	753,980,512	728,286,106	1,571,828	25,694,406
결산확인액	708,287,192	753,980,512	728,286,106	1,571,828	25,694,406
차 액	0	0	0	0	0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728,286,106천원은 예산현액의 102.8%로써 19,998,914천원이 초과 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공동재산세와 세외수입의 증가에 기인함.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6.5%이며 결손액은 1,571,828천원으로 시효소멸이 1,460,515천원, 무재산 87,912천원, 평가액 부족으로 인한 결손은 14,546천원, 체납처분 중지 4,855천원, 행방불명으로 인한 결손이 4,000천원임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728,286,106	728,286,106	0

본 회계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함.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 천원, %)

연도별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 대비 징수 결정액	징수 결정 대비 수납액	징수 결정 대비 불납 결손액
2017년	670,393,219	753,980,512	728,286,106	1,571,828	112.4	96.5	0.2
2016년	585,788,170	660,035,639	629,739,253	2,196,641	112.7	95.4	0.3
증 감	84,605,049	93,944,873	98,546,853	△ 624,813		1	

2016회계연도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징수활동의 강화로 전년도 629,739,253천원 보다 98,546,853천원이 많은 728,286,106천원이 수납됨.

결손액은 전년도 2,196,641천원 보다 624,813천원이 감소된 1,571,828천원으로, 시효결손이 1,460,515천원, 행방불명으로 인한 결손이 4,000천원, 무재산 87,912천원, 체납처분 중지 4,855천원, 평가액 부족으로 인한 결손이 14,546천원임.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708,287,192	753,980,512	728,286,106	1,571,828	25,694,406
지방세	지방세	69,307,099	75,595,803	74,520,354	124,873	1,075,449
세 외 수 입	소 계	35,838,705	73,729,156	49,110,199	1,446,955	24,618,957
	경상적 세외수입	27,481,007	33,366,895	33,256,946	-	109,949
	임시적 세외수입	8,357,698	40,362,261	15,853,253	1,446,955	24,509,008
지방교부세		11,844,700	12,749,707	12,749,707	-	-
조정교부금 등		179,231,326	179,840,959	179,840,959	-	-
보조금		316,407,719	316,407,244	316,407,244	-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5,657,643	95,657,643	95,657,643	-	-

세목별 세입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10.2%인 74,520,354천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49,110,199천원, 지방교부세는 1.7%인 12,749,707천원, 조정교부금 등은 179,840,959천원, 보조금은 316,407,244천원이 수납됨.

나. 세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결 산 액	670,393,219	708,287,192	593,290,859	55,581,661	59,414,672
결산확인액	670,393,219	708,287,192	593,290,859	55,581,661	59,414,672
차 액	0	0	0	0	0

○ 세출결산 개요

예산액은 670,393,219천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37,893,973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708,287,192천원으로, 예산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42%인 2,996,378천원이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예산의 부족 등임.

이체는 예산현액의 0.9%인 6,383,800천원으로써 2017. 7.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에 의한 것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3.7%에 해당하는 593,290,859천원이며 이월액은 55,581,661천원으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25,718,899천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8,862,762천원, 계속비 이월액 1,000,000천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예산교부 지연에 따른 사업시행 연기 등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4%에 해당되는 59,414,672천원으로 주요사유는 예산집행 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 등에 기인함.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지출액	금고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593,290,859	593,290,859	0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출납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함.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6 회계연도 지출액	2017회계연도			전년대비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	금 액	비율 (%)
합 계	536,081,609	708,287,192	593,290,859	83.7	57,209,250	110.7
일반공공행정	29,935,703	35,713,515	30,974,286	86.7	1,038,583	103.5
공공질서 및안전	1,487,520	1,711,835	1,624,802	94.9	137,282	109.2
교육	9,090,743	8,826,880	8,042,637	91.1	-1,048,106	88.5
문화및관광	17,206,149	39,260,050	28,214,125	71.8	11,007,976	164
환경보호	27,730,775	35,525,845	33,017,997	92.9	5,287,222	119.1
사회복지	315,363,140	391,719,012	345,372,897	88.1	30,009,757	109.5
보건	16,320,875	20,449,282	17,777,274	86.9	1,456,399	108.9
농림해양수산	848,664	2,031,577	1,504,658	74	655,994	177.3
산업·중소기업	4,372,327	2,628,830	1,887,657	71.8	-2,484,670	43.2
수송및교통	5,510,557	10,255,602	7,651,397	74.6	2,140,840	138.8
국토및지역개발	5,014,981	8,846,711	6,519,604	73.6	1,504,623	130
예비비	-	38,395,875	-	-	-	-
기 타	103,200,175	112,922,178	110,703,525	98	7,503,350	107.3

본 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345,372,897천원, 기타 110,703,525천원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사회복지 30,009,757천원이며 가장 증가 폭이 큰 부문은 농림해양수산으로 전년대비 177.3%가 증가함.

(3) 특별회계

가. 세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6,974,506	31,353,736	17,606,939	106,417	13,746,796
특별 회 계	의료급여기금	872,384	1,286,110	933,166	-	352,944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1,725,957	1,689,852	1,689,852	-	-
	주차장특별회계	14,134,788	28,107,760	14,729,881	106,417	13,377,878
	지하수특별회계	241,377	270,014	254,040	-	15,974
결산확인액		16,974,506	31,353,736	17,606,939	106,417	13,746,796
차 액		0	0	0	0	0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17,606,939천원은 예산현액의 103.7%로써 632,433천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과태료 수입 증가에 기인함.

○ 결손처분

결손처분액은 106,417천원으로 주로 시효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으로 검사 결과 처분사유는 적정함.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천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17,606,939	17,606,939	0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함.

나. 세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6,955,780	16,974,506	7,192,307	0	9,782,199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872,384	872,384	858,173	0	14,211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전기금	1,725,957	1,725,957	157,000	0	1,568,957
	주차장특별회계	14,116,062	14,134,788	6,136,741	0	7,998,047
	지하수특별회계	241,377	241,377	40,393	0	200,984
결산확인액		16,955,780	16,974,506	7,192,307	0	9,782,199
차 액		0	0	0	0	0

○ 세출결산 개요

예산액은 16,955,780천원 이었으나 전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이월액 18,726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6,974,506천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2.3%에 해당하는 7,192,307천원이며 이월액은 없음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7,192,307	7,192,307	0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함.

2. 기금의 결산

본년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계	24,870,079	2,449,836	7,791,503	5,341,667	27,319,915
통합관리기금	6,604,273	2,030,454	2,161,433	130,979	8,634,727
재난관리기금	2,142,301	270,870	857,190	586,320	2,413,171
양성평등기금	905,947	3,059	14,059	11,000	909,006
자활기금	1,661,489	△157,839	163,399	321,238	1,503,650
장애인등의편의 시설설치촉진기금	1,003,019	106,802	163,617	56,815	1,109,821
노인복지기금	788,463	2,129	12,420	10,291	790,592
중소기업육성기금	2,177,500	△409,967	1,754,533	2,164,500	1,767,533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3,000,000	275,327	383,655	108,328	3,275,327
옥외광고정비기금	1,367,060	△156,257	453,268	609,525	1,210,803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780,555	12,366	72,906	60,540	792,921
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기금	2,596,012	△71,172	91,008	162,180	2,524,840
도로굴착복구기금	1,098,167	576,213	1,513,572	937,359	1,674,380
식품진흥기금	745,293	△32,149	150,443	182,592	713,144

2017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24,870,079천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7,791,503천원을 더하고 사용액 5,341,667천원을 공제한 27,319,915천원으로 전년대비 2,449,836천원 증가하였음.

3. 재무제표의 결산

2017회계연도 은평구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2017	2016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1,618,121,994	1,555,220,508	62,901,486	4.04
I. 유 동 자 산	195,998,068	159,179,377	36,818,691	23.13
II. 투 자 자 산	14,729,372	14,093,450	635,922	4.51
III. 일 반 유 형 자 산	185,993,161	187,725,106	(1,731,945)	-0.92
IV. 주 민 편 의 시 설	315,594,823	293,655,540	21,939,283	7.47
V. 사 회 기 반 시 설	897,695,356	894,990,212	2,705,144	0.30
VI. 기 타 비 유 동 자 산	8,111,214	5,576,823	2,534,391	45.45
부 채	26,714,156	23,755,131	2,959,025	12.46
I. 유 동 부 채	12,286,785	10,961,080	1,325,705	12.09
II. 장 기 차 입 부 채	-	-	-	-
III. 기 타 비 유 동 부 채	14,427,371	12,794,051	1,633,320	12.77
순 자 산	1,591,407,838	1,531,465,377	59,942,461	3.91
I. 고 정 순 자 산	1,404,230,231	1,379,810,255	24,419,976	1.77
II. 특 정 순 자 산	26,006,604	24,991,286	1,015,318	4.06
III. 일 반 순 자 산	161,171,003	126,663,836	34,507,167	27.24

2017회계연도 은평구의 자산은 1조 6,181억원으로 전년도의 1조 5,552억원 보다 629억원(4.04%) 증가하였는데, 주요 요인으로는 현금과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이 포함된 유동자산이 368억원(23.13%) 증가하였기 때문임.

반면, 2017회계연도 은평구의 부채는 267억원으로 전년도의 238억원 보다 29억원(12.46%) 증가하였는데, 주요 요인으로는 보조금 집행잔액과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된 장기예수 보증금이 작년대비 늘어남에 따라 유동 부채가 13억(12.10%), 비유동부채가 16억(12.76%) 각각 증가하였기 때문임.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2017	2016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I. 사업순원가 (가 - 나)	134,338,032	112,227,307	22,110,725	19.70
가. 사업총원가	454,076,801	416,186,358	37,890,443	9.10
나. 사업수익	319,738,769	303,959,051	15,779,718	5.19
II. 관리운영비	112,603,113	111,255,162	1,347,951	1.21
III. 비배분비용	7,351,285	7,730,212	(378,927)	-4.90
IV. 비배분수익	12,433,472	19,943,213	(7,509,741)	-37.66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241,858,958	211,269,468	30,589,490	14.48
VI. 일반수익	297,218,281	260,642,276	36,576,005	14.03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55,359,323)	(49,372,808)	(5,986,515)	-12.13

은평구의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4,540억원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197억원을 차감한 1,343억원이며, 총 70개의 정책사업 중 순원가가 많은 상위 정책사업은 ‘어르신 복지 증진’ 210억원과 ‘친환경적인 청소관리’ 138억원임.

또한, 2017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101억원과 기타관리운영비 2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감가상각비 52억원, 대손상각비 19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경상세외수익 30억원, 임시세외수익 82억원, 기타수익 15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017회계연도 은평구의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는 554억원으로 전년도의 494억원 보다 60억원(12.12%) 감소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수익 등 정부 간 이전수익 증가로 인한 것임.

4. 성과보고서

은평구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7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함.

은평구는 본 회계연도의 ‘북한산 큰 숲, 사람의 마을 은평’이라는 희망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10개)-정책사업목표(70개)-단위사업(18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70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5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함.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구 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 수(B)	미달성 수	달성률 (B/A)
계	10	70	156	117	39	75
감사담당관	1	1	2	2	0	100
홍보담당관	1	1	3	3	0	100
행정안전국	1	12	31	23	8	74
협치문화국	1	11	18	12	5	67
주민복지국	1	9	20	13	7	65
재정경제국	1	9	13	11	2	85
도시환경국	1	9	24	18	6	75
건설교통국	1	10	23	20	3	87
보 건 소	1	7	20	15	5	75
구의회사무국	1	1	2	0	2	0

은평구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은 100%를 달성한 반면, 구의회사무국은 2개 지표 모두 미달성에 그치는 결과를 보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5.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권

채권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계	14,238,601	5,230,571	4,301,621	15,167,551
일반회계	7,094,736	1,028,176	636,956	7,485,956
특별회계	346,040	233,789	147,789	432,04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040	-	-	5,04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41,000	233,789	147,789	427,000
기금	6,797,825	3,968,606	3,516,876	7,249,555
자활기금	40,000	-	40,000	-
중소기업육성기금	6,423,250	3,888,536	3,399,346	6,912,440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334,575	80,070	77,530	337,115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167,551천원으로 확인됨.

(2) 채무 : 해당없음

(3) 공유재산

2017회계연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1,111,670,093	46,726,648	22,851,983	1,135,544,758
행정 재산	공공용재산	760,955,459	22,636,890	13,215,350	770,376,999
	공용재산	328,080,353	22,131,114	3,903,885	346,307,582
	기업용재산	-	-	-	-
	보존재산	-	-	-	-
	소 계	1,089,035,812	44,768,004	17,119,235	1,116,684,581
일반재산		22,634,281	1,958,644	5,732,748	18,860,177

검사결과,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23,874,665천원이 증가한 1,135,544,758천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구립 역마을 어린이집 매입, 응암동 구립 지역 아동센터 설치부지 매입, 녹번동 80-40번지 외 2필지 기부채납 등이며, 감소내용은 응암제1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내 용지매각, 녹신경로당 멸실 등임

(4) 물품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 득	처 분	
수 량	876	191	65	1,002
금 액	7,459,799	1,719,924	313,958	8,865,765

검사결과, 물품은 전년도 보다 1,405,966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증가원인은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물품매입 증가이며, 주요 증가내역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시행으로 전기자동차 17대, 냉난방기·냉방기 78대, 디지털비디오레코더 8대, 비디오프로젝터 10대 등임.

II.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II.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1. 세입 결산 분야

(1) 관련법 착오적용에 따른 부과 취소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단위:원)

부서명	부과연도	부과액	납부액	이자	환급액	비고
공원녹지과	합 계	3,942,000	2,008,480	256,440	2,264,920	
	2012	1,971,000	1,971,000	252,200	2,223,200	
	2013	1,971,000	37,480	4,240	41,720	

공원녹지과에서 2012년~2013년 부과된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은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건축법이 적용되어야 하나 개발제한구역관리특별조치법으로 관련법을 착오 적용함으로써 2017년에 부과취소하고 환급하였으며, 담당자의 인수인계 소홀로 뒤늦게 이자까지 가산해서 환급액을 지급함.

【개선 및 권고사항】

관련법 적용 행정착오에 따라 부과를 취소하고 변경하는 것은, 행정상의 번거로움 뿐만 아니라,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고 불필요한 이자까지 환급을 초래함. 이는 민원인 측에서 보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조세저항도 유발될 수 있으므로 업무처리 시에 관련법규의 적용과 인수인계 사항에 대하여 좀 더 정확성을 기해 신뢰감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사비 과다지급으로 인한 환수발생

【현황 및 문제점】

치수과는 2013년~2017년도에 시행한 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공사비 과다 지급 발생건이 총 23건 발생하여 103,712천원을 환수조치함

【개선 및 권고사항】

발주부서에서는 계약 시 또는 사전 설계 시에 치밀한 사업계획으로 보다 주의를 기울여 공사비 등의 사업예산이 과대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착오로 인한 환급 발생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회계연도	환급액	사유별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차량 미등기	법령 개정	기 타
2017	427,170	26,461 (6.19%)	12,619 (2.95%)	43,968 (10.29)	38,308 (8.97%)	41,700 (9.76%)	264,114 (61.83%)

※()는 환급 총액에 대한 비율임

2017년도 환급총액은 427,170천원이고, 행정기관 착오부과가 26,461천원으로 환급 총액 대비 6.19%이며,

청소행정과는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 시 소액이지만,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이사로 인한 관할 주소지 변동) 80,190원 환급이 있었고, 세무1과는 재산세 관련 주택이 멸실된 토지분을 주택분으로 착오 부과하여 추후 환급하는 사례가 발생함.

【개선 및 권고사항】

행정기관 착오로 세액이 잘못 계산되어 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지방세 부과·징수시 부동산 등 과세자료에 대하여 건축물 대장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신중히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미수납액 증가에 따른 결손처리 현황

1) 주차장특별회계의 미수납액(임시적세외수입)증가

【현황 및 문제점】

주차장특별회계 임시적세외수입 현황

(단위:천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3,672,590	17,760,727	13,377,878	106,417	13,271,461

주차장특별회계 임시적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75%로 징수결정액의 대부분이 미수납액으로 구성되어 있음.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금액을 제외하고 이월되는 13,271,461천원 중 재산권 미확보로 2018연도에 결손처분이 예상되는 금액은 113,631천원으로 결손금액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되어 징수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전, 발생하는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즉시 채권보전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채권보전조치를 취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회수 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액 중 회수불능 분 결손처분 권고

【현황 및 문제점】

당기 말 현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체납된 상태로 있는 체납자가 91명이고 그 체납금액은 14,908,840원임. 이 체납액 중에서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압류 등의 채권확보조치도 되어 있지 않고, 무재산 등의 이유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체납 건이 14건으로 금액은 1,092,530원임.

【개선 및 권고사항】

지하수 이용 부담금 14건의 회수불능 체납액 1,092,530원은 부실자산으로, 부실자산이 채권으로 누적되면 자산의 실제성이 왜곡 표시되고, 재정상태 표시의 신뢰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결손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중 아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고, 압류 등의 채권확보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46건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합당한 채권확보 조치를 하고, 체납자 중에서 조세부담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채권최고 등의 조치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지출금반환비 미수납액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강구

【현황 및 문제점】

해마다 복지에 대한 예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초수급자의 소득발생이나 증가분을 즉시 파악하지 않아 보장금액 지출 후 사후에 소득이 파악되어 지출금반환비(보장금 환수)의 미수납액이 증가하면서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사회보장 통합 업무 지침」에 의거 일용 근로소득 발생 시 소득·재산 공적자료를 연2회 국세청에서 통보 받아 소득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있지만 원천징수세를 반기로 신고하는 업체도 일용근로자 소득에 대하여 매월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월 1회는 아니더라도 분기별로 유관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등 상급기관에 관련지침 개정 등을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2. 세출 결산 분야

(1) 이월예산의 최소화 노력

【현황 및 문제점】

일반회계 최근 5년간 세출결산액과 예산액대비 이월액 및 집행잔액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예산현액(A)	708,287	601,348	533,526	484,239	452,122
세출결산액	593,291	536,081	502,421	450,816	413,603
이월액(B)	55,581	37,894	15,560	14,390	18,533
증감액	17,687	22,334	1,170	-4,143	18,533
비율(B/A)	7.85%	6.30%	2.92%	2.97%	4.10%
집행잔액(C)	59,415	27,373	15,545	19,033	19,986
증감액	32,042	11,828	-3,488	-953	19,986
비율(C/A)	8.39%	4.55%	2.91%	3.93%	4.42%
계(B+C)	114,996	65,267	31,105	33,423	38,519
비율(B+C)/A)	16.24%	10.85%	5.83%	6.90%	8.52%
순세계잉여금	69,787	48,911	27,221	7,942	13,746

2017회계연도 이월액 및 집행잔액은 전년도 대비 각각 17,687백만원과 32,042백만원 증가 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각각 7.85%와 8.39%임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명시이월	25,719	16,291	6,854	2,721	9,221
증감액	9,428	9,437	4,133	-6,500	1,223
사고이월	28,863	21,121	8,706	11,669	8,543
증감액	7,742	12,415	-2,963	3,126	-5,198
계속비이월	1,000	500	0	0	769
증감액	500	500	0	-769	-202
합 계	55,582	37,912	15,560	14,390	18,533
증감액	17,670	22,352	1,170	-4,143	-4,177

2017회계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은 전년도대비 각각 9,428백만원, 7,742백만원, 500백만원이 증가하였음.

2016 ~ 2017회계연도 사고이월액이 2013~2015회계연도 대비 2배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2017회계연도에는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도 2배이상 증가하였음.

분야별 이월액은 「문화 및 관광」 10,230백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 23,262백만원, 「노인·청소년」 11,664백만원 등 복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사업별로는 명시이월은 도서관, 어린이집 건립 등 설계 및 일정 변경이 되는 시설투자가 대부분이고 사고이월은 연도 말 교부금 배정 등 연내 사업시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주요 이월액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	사업명	예산 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공원녹지과	앵봉산 위험배수로 및 비탈면 정비	198	185	10월 특교세 교부로 연도내 집행 어려움
교육청소년과	갈현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4,288	3,152	2018년 준공예정 서울시 건립 일정 변경 가능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403	152	지구단위계획 을 위한 행정절차 필요하여 연도 내 집행 어려움
문화관광과	정지용문학관조성	755	734	2018년 준공예정
문화관광과	생활음악지원센터 조성	347	169	연도말(11월)특교금 교부
문화관광과	응암정보도서관 운영(시설비)	2,276	2,256	연도말(11월)특교금 교부
보육지원과	어린이집확충 (구립전환)	4,804	3,543	도시계획변경, 연도말(12월) 예산배정됨
생활경제과	전통시장현대화사업	708	216	회계연도 내 집행 어려움
생활경제과	골목상권활성화 사업	288	202	회계연도 내 집행 어려움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12,926	7,011	부지매입 등 진행시간 소요
여성정책과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2,667	2,572	연도말(12월) 특교금 교부

부서	사업명	예산 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치수과	증산동 2개소 사각 형거 보수보강공사	500	500	하반기 특교금 교부
토목과	응암로21길 보행 환경개선공사	500	500	10월 특교세 교부 연내집행 어려움
토목과	응암시장 활성화 기반조성공사	300	300	10월 특교세 교부 연내집행 어려움
토목과	도로소음 취약지역 방음벽설치	240	240	10월 특교세 교부 연내집행 어려움

【개선 및 권고사항】

이월 예산의 원인은 복지시설 건축에 따른 토지매입 일정 지연, 도시계획 변경 등 공사기간 지연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월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민원수렴, 예산확보 등 면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고,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여 시행하여야 효율적일 것입니다.

세부사업 중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는 생활음악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시비를 확보하여 국민대학과 협력하여 운영하는데 예산확보가 미비하여 착공지연에 따른 사고이월 예산 169백만원이 없었으면 2018년 사업시행도 어려웠을 거로 예상되고, 2019년도에는 시비가 확보되지 못하여 민간위탁의 자체 수익사업으로 운영한다고는 하나, 초기에는 인건비 등 구비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는 시설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를 매년 교부받아 시행하는 업무이므로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에 예산이 교부 되어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으로 불용이나 이월예산이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

【현황 및 문제점】

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증감액	106,939,168	57,209,250	17,687,688	32,042,229	
2017	708,287,192	593,290,859	55,581,661	59,414,672	8.38%
2016	601,348,024	536,081,609	37,893,973	27,372,443	4.54%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집행잔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59,414,672	1,237,870	2,578	10,151,838	9,626,511	38,395,875

2017년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7,893,973천원을 포함하여 708,287,192천원이며, 이 중 이월액을 제외하고 실제 지출한 금액은 593,290,859천원으로 59,414,67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이는 작년도 대비 3.84% 증가하였으며,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학교복지, 청년일자리 사업 등 예산 미집행 건수는 103건에 11,102,614천원이며 출산율 저하에 따른 어린이집 관련 사업,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마을활력소 조성운영 사업 등에서 집행잔액이 증가하고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집행잔액 증가원인이 예측하지 못한 조정교부금과 초과세입의 증가에 있다고는 하지만, 계속되는 동일한 사업에서 집행잔액 발생은 예산편성 시 계획이 미비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의 집행내역을 보면 출산율 저하로 보육 및 어린이집 관련 대상사업의 인원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육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예산집행과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행정が必要です.

(3) 예비비 편성 기준 준수

【현황 및 문제점】

예비비 편성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예비비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증감액	106,939,168	27,996,485	△3,659,832	△3,687,865	71,881
2017	708,287,192	39,234,010	838,135	655,357	150,700
2016	601,348,024	11,237,525	4,497,967	4,343,222	78,819

※ 2015년부터 예비비에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구분편성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 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다음연도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으나, 의회사무국의 경우 예측이 가능한 인건비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인력운영비로 사용하였으며, 전산정보 과의 내부행정전산화 및 기능향상은 시기적으로 촉박하다고 하지만, 예비비로 추경 편성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등 전년대비 예비비 이월액이 증가하였음.

【개선 및 권고사항】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므로 당초 예산편성 시 세입이 과소하게 산정되어 적시에 편성하지 못해 비효율성을 초래하므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2018회계연도의 교부금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초과 발생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2019회계연도에는 적시에 지출될 수 있도록 신중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집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재무제표 결산 분야

「재정상태표」의 자산과 부채에 일부내용이 계상누락

【현황 및 문제점】

재정상태표 현황

(단위:천원)

자산 란	부채 란
I. 유동자산	I. 유동부채
기타유동자산 1,783,798	기타유동부채 2,936,944

기타유동자산은 1,783,798천원 기타유동부채는 2,936,944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의 두 과목에는 각각 146,240천원의 금액이 다음과 같이 누락됨.

(단위:천원)

기타유동자산 과목	기타유동부채 과목
단기보관현금 146,240	단기예수보관금 146,240

재정운영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재정상태표 자산총액과 부채 총액은 각각 146,240천원만큼 과소 계상됨.

【개선 및 권고사항】

재무제표 결산서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적은 금액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성과보고서 분야

(1) 성과지표 관련

1) 성과지표로서 타당성이 부족한 사례

【현황 및 문제점】

부서명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목표	달성성과
기획 예산과	구정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구정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위한 건전한 재정운영	예산집행을	집행액 / 예산현액 *100	83	예산집행 88 (달성률 108%)
생활 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사회통합의 기반 구축	예산집행을	집행액 / 예산현액 *100	90	예산집행 97.2 (달성률 108%)
어르신 복지과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효율적인 복지행정	예산집행을	예산총액에 대한집행을	98	예산집행 98 (달성률 100%)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적절하며 계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야 하나, 다음 사례에서는 예산집행률을 성과지표로 정함으로써 정책사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움.

【개선 및 권고사항】

효율적 예산집행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예산집행율은 타당성이 미흡하며, 동일한 예산 집행액으로 업무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성과지표로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소외계층의 참여율을 높이는 놀이문화의 종목수나 참여율 등이 성과지표로 적합하며, 일자리창출이나 건강 돌봄 서비스 등을 계량화하여 성과지표로 정하는 등 성과지표로서 타당성 개선이 필요합니다.

2) 성과지표가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없어 성과를 측정하기가 어려운 사례

【현황 및 문제점】

부서명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16 달성성과	'17 달성성과
자치 안전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구민참여 활성화	깨끗하고 쾌적한 동 청사관리	예산집행율	목표 100 실적 90 달성 90%	목표 100 실적 95 달성 95%
		통합민원 창구 관리	예산집행율	목표 100 실적 95 달성 95%	목표 100 실적 98 달성 98%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설정되어야 하나 성과지표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이어서 성과측정이 어려움.

【개선 및 권고사항】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성과지표의 적정성 (사업목적과의 연관성, 결과중심지표)을 충분히 검토 후 구체적인 사례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2)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관련

1) 측정산식이 계량화 되어있지 않은 사례

【현황 및 문제점】

부서명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16년 달성성과	'17년 달성성과
감사담당관	엄정한 감사 실시와 공정 하고 투명한 민원관리로 청렴한 공직 풍토조성	청렴사업 추진율	계획대비 추진율	목표 100 실적 100 달성율 100%	목표 100 실적 100 달성율 100%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율	현장민원 처리율	목표 100 실적 100 달성율 100%	목표 100 실적 100 달성율 100%

부서명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16년 달성성과	'17년 달성성과
맑은도시과	지역에너지 적정관리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추진실적 /추진계획) *100	0	목표 100 실적 100 달성율 100%
청소행정과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및 자원 재활용을 극대 화로 쾌적한 환경조성	주민과 함께 하는 폐기물 감량(톤)	발생 폐기 물의 공공 처리실적	목표 41,309 실적 49,011 달성 81%	목표 47,835 실적 49,517 달성 96%

위의 사례들은 측정산식이 계량화되어 있지 않아 성과에 대한 측정이 어려움. 정책사업목표의 달성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려면 측정산식(방법)이 계량화가 가능해야 하는데 추진실적/추진계획*100만으로는 성과에 대한 측정이 어려움.

【개선 및 권고사항】

무조건 100%달성으로 표기되는 측정산식을 지양하고, 맑은도시과는 미니태양광 보급 금액이나 건수로 측정산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감사담당관은 구체적 감사범위나 감사 횟수 등으로 측정산식(방법)이 계량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성과지표가 폐기물 감량이므로 측정산식을 전년대비 폐기물 처리실적으로 설정하는 등 적절한 측정산식의 개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2)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이 일치하지 않은 사례

【현황 및 문제점】

부서명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16년 달성성과	'17년 달성성과
공원녹지과	아름다운 공원 조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건강한 여가 활동 장소제공, 생태계 복원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	공원내 체육 시설 유지관리 및 체육시설 보수및 교체(m ²)	점검 및 횡수	목표 80 실적 1,440 달성 180%	목표 80 실적 1,450 달성 181%
		공원시설물 보수정비(m ²)	점검 및 횡수	목표 47 실적 3,200 달성율 680%	목표 47 실적 3,210 달성율 682%
		가로녹지대 및 가로수유지 관리(m ²)	점검 및 횡수	목표 200,000 실적 200,000 달성 100%	목표 200,000 실적 200,000 달성 100%
		산림내 재산 및 침사지 유지관리(ha)	점검 및 횡수	목표 1,460 실적 1,460 달성율 100%	목표 1,460 실적 1,460 달성율 100%
		건강한 도시 숲 조성(m ²)	점검 및 횡수	목표 1,460 실적 1,460 달성율 100%	목표 1,460 실적 1,460 달성율 100%

성과지표 중 공원내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체육시설보수 및 교체(m²)와
공원시설물 보수정비(m²)는 실적치에 비해 목표치가 너무 낮음.

성과지표는 면적으로 되어있고, 측정산식은 점검 및 횡수로 설정되어 있어
성고지표와 측정산식이 일치되지 않음

【개선 및 권고사항】

성과지표에 맞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산식을 구체화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3) 목표 설정 미흡

【현황 및 문제점】

부서명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16년 달성성과	‘17년 달성성과
자치안전과	안전도시 만들기 지원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 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의 예방과 대응 능력강화	범죄예방설계사업 (개소)	목표 1 실적 1 달성 100%	목표 1 실적 1 달성 100%
		재난안전홍보 횡수	목표 1 실적 1 달성 100%	목표 1 실적 1 달성 100%
민관협치과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기반 조성 및 시민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마을공동체사업 발굴 및 지원 (마을공동체 수)	목표 60 실적 142 달성 236%	목표 90 실적 144 달성 160%
주거재생과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추구하는 도시환경 기반 구축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전점검	목표 4 실적 4 달성을 100%	목표 4 실적 6 달성을 150%
		공동주택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	목표 3 실적 6 달성을 200%	목표 3 실적 9 달성을 300%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	목표 400 실적 412 달성을 103%	목표 400 실적 1,272 달성을 318%
보건위생과	식품위생업소, 공중 위생업소 등 위생 및 식품안전 수준향상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지도 점검(%)	목표 5 실적 40 달성을 800%	목표 5 실적 32 달성을 640%
	유통농정 및 가축관리를 통한 원산지 표시제 정착과 식품의 유통거래 질서 확립	원산지 표시제 정착과 식품의 유통거래 질서 확립(%)	목표 5 실적 43 달성을 784%	목표 5.5 실적 22 달성을 400%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여 달성율이 초과되었음에도 원인분석을 하지 않고 같은 목표를 설정하거나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목표대비 실적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지 않아 환류가 미흡함.

【개선 및 권고사항】

성과미달성 및 초과달성(130% 이상)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제시하고, 전년도 달성율을 분석하여 목표수준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현실적인 목표치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4) 전년대비 달성율에 대한 분석 필요

【현황 및 문제점】

부서명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16년 달성성과	‘17년 달성성과
생활 경제과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	일자리 플러스센터 취업실적(건)	취업건수	목표 2,350 실적 2,400 달성율 102%	목표 2,400 실적 1,935 달성율 81%
보건소	식품매개 감염병 발생의 조기파악과 예방 활동추진을 통해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	감염병예방 관리사업 (목표대비 실적율)(%)	방역활동 실적	목표 40 실적 90 달성율 225%	목표 50 실적 43 달성율 86%

‘16년도에는 달성율을 초과하였으나, 17년에는 달성율이 20%이상 감소됨.

【개선 및 권고사항】

지난연도 성과계획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반영해서 원인분석하여 작성되어야 하고,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하여 단위사업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성과달성을 잘못표기

【현황 및 문제점】

부서명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16년 달성성과	17년 달성성과
토목과	도로시설물의 안전 관리 및 기능 향상을 으로 주민들의 편익증진	도로개설 공사실적 (m)	도로개설 길이	목표 150 실적 150 달성 100%	목표 0 실적 0 달성 100%

목표를 0으로 설정하여 성과달성을 100% 달성한것처럼 표기함

【개선 및 권고사항】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정확한 성과계획서 작성이 선행되어야 하니 측정가능하고 정확한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Ⅲ. 전년도 지적(권고)사항 조치내용

Ⅲ. 전년도 지적(권고)사항 조치내용

전년도 지적(권고)사항에 대한 분야별, 부서별 조치내용 검사결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 보조금 사업 관리철저,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 중복부과 및 착오 부과 발생 최소화 등 부서별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되었음.

분야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해당부서
세입	건축허가를 득한 사항 등에 이행강제금 부과 후 취소	○ 이행강제금 부과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겠음.	공 원 녹지과
	중복부과에 대한 부과취소	○ 향후 이행강제금 부과 시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부과 사전 방지 철저.	주 거 재생과
	도로사용료 착오부과에 따른 환급	○ 관련 절차에 따라 과오납금 환급완료 ○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용지 실태조사 실시	재무과
세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본예산 편성시 원인을 규명하여 타당한 이유가 없을 시 감액 편성하겠음.	기 획 예산과 (총괄)
		○ 실제 집행할 금액보다 과다한 예산 편성 - ‘경로당운영관리’ : 불용비율 39.66% (2016년 추경예산 110,000천원 편성 후 집행계획 변경되어 불용액 과다 발생) ○ 향후 사업예산 편성 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편성하고, 예산 불용이 예상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 조치하여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겠음.	어르신 복지과
		○ 불용액이 발생한 기타직보수(101-02)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청원경찰, 실무수습 직원의 보수이며,	총무과

분야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해당부서
세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p>○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첫째, 의원면직이나 임기만료 후 업무량 감소 또는 기존 직원간 업무조정을 통해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 둘째, 신규채용 분야의 사업추진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경우, 셋째, 결원 시 바로 충원되지 못하고 채용이 늦어지는 경우로 인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함 향후에는 임기제공무원 등의 수급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p>	총무과
		<p>○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해 사업별 집행계획을 고려하여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추진하고, 예산 불용이 예상될 경우 감액조치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급여 (보조사업) : 불용비율 23.12%(16년) → 17%(17년) - 기초수급자양곡할인지원 : 불용비율 20.87%(16년) → 0.67%(17년) - 차상위계층양곡할인지원 : 불용비율 36.47%(16년) → 6.5%(17년) 	생활복지과
		<p>○ 실제 집행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예산 편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현동 1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정비구역 지정이 늦어져 예산집행을 하지 못함 - 향후 사업추진사항을 정확히 분석하여 적절하게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음 	건축과

분야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해당부서
세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주정차단속활동 예산집행은 주로 주차단속원 인건비 및 4대보험 잔액으로 변동에 대비한 예산편성이며, ○ 과태료부과 및 체납분징수활동 공공운영비 예산은 각종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집행잔액으로 유동적인 주정차단속건수 대비한 예산임. 향후 과거 5년간 집행액과 향후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줄이도록 하겠음. 	교 통 지도과
	보조금 사업 관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연계, 보조금 이월사업 추진 독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기준, 31% 집행 - 사고이월사업 연내 100% 집행 목표 ○ 보조금 실수령액 확인 후 간주처리 ○ 예산편성시 수요를 정확히 예측, 구비 부담금을 충분히 확보하여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기 획 예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평환경플랜트 관리 민간위탁금을 근거 없이 선 지급 후 정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정산비에 대하여는 조기집행에서 제외하여 정산비가 과다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하겠음. 	청 소 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하여 구비 부담금 미 확보로 인한 반납액 발생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집행 후 매월 정산을 실시하여 구비 부담금 추계 결과를 추경에 반영하여 과도한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임 - 2016년 11월 당초 예산편성액 대비 실수령액 감소 및 보조금 미감간주로 예산액보다 과다하게 집행 → 집행된 보조금 반납 조치 	보 육 지원과, 여 성 정책과

분 야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해당부서
세출	보조금 사업 관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미간주 처리에 관한 관리 소홀 -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외 3개 사업 보조금 수령 및 간주처리를 정확히 하고 향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힘쓰겠음. ○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시비보조금 확보(집행)에 있어 사업 초기단계부터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예산의 조기교부 및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p>공 원 녹지과,</p> <p>도 시 계획과</p>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도 일반예비비 지출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송비용은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다만, 본예산 편성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토록 조치하겠음. ○ 소송수행시 업무철저와 충분한 자문 등으로 예측되지 않은 예비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음. ○ 2015년 12월 31일 문학진흥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화 되어, 2016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운점이 있었음. ○ 추후, 본예산 편성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토록 조치하겠음. 	<p>기 획 예산과 (총괄),</p> <p>청 소 행정과</p> <p>문 화 관광과</p>
	노후 하수관 정비 공사와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도 공사 감독업무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2018년부터 「하수분야 전문감리」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중에 있음 ○ 공사시행 중 설계변경은 구 재정여건상 부족한 사업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 충당하고 있으나, 시비배정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사안으로 익년부터 조기배정건의로 변경계약을 최소화 하겠음 	<p>치수과</p>

분야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해당부서
세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출예산 270,868천원은 잉여금 203,962천원을 포함한 결산으로 집행율이 23.4%이나, 잉여금을 제외한 세출예산은 66,906천원, 집행액 63,606천원으로 집행율이 95.7%임 - 향후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적정한 예산이 집행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음. 	치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특별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 잔액중 예비비(30억)와 적립금(30억)을 제외한 집행률은 92%이며, 더욱 체계적인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음 	교 통 지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한 목적에 적합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신청 홍보 추진(4월, 6월, 8월, 10월 총 4회 실시) - 지역신문 보도 및 CJ헬로비전 방송 실시 등 	생 활 복지과
정확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은 운용을 위한 기초 재원(10억원)이 마련되었으므로, 이자수입, 과태료 수입 등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철저를 기하겠음. ○ 또한, 기금 세입 세출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음. 	장애 인 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기금의 재원이 기금 설립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기금 고유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금 집행률 제고에 힘쓰겠음 	기 획 예산과 (총괄)

분야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해당부서
세출	정확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중 미집행 사유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개선자금 융자금으로 1억원 책정되어 있었으나, 대출신청자가 은행의 담보조건에 충족되지 못하여 집행율이 저조 하였음 ○ 갈현, 역말길 퇴폐업소 단속을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야간근무 수당으로 7,300만원 책정되어 있었으나, 업주들의 자진폐업 등 퇴폐업소 조기 퇴출시켜 감시원수당 집행율이 저조 하여 생긴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의 조기 달성으로 예산 절약 사례. 	보 건 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도 집행율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도부터는 기금 융자 규모를 적정금액의 사업비 편성 및 집행추진 	사회적 경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관리기금의 대부분이 하수시설물 보수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침수방지 시설 설치 공사에 지출되고 있으며, 이는 예산편성이 부족한 데 기인한 것으로, 단순 유지보수가 아닌 수해예방 차원에서 부득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자 치 안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 집행율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장학금 제도의 확대시행으로 등록금의 상당 부분을 국가장학금으로 받게 됨에 따라 학자금 대여액이 감소하였음. - 향후 기금 세출계획 수립시에 보다 정확한 금액을 산출, 편성토록 하겠음. 	청 소 행정과
	세입추계와 세출예산편성의 합리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도 일반조정교부금 추가분 교부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증가하였음. ○ 향후 우리구 세입에 대하여 과학적 기법을 활용, 과년도 추이와 경제성장 정도 등 모든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기 획 예산과

분야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해당부서
세출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확한 물품등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부서 물품관리 담당자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2017. 7. 11), 2차(2018. 3. 29) ○ 전부서 물품관리담당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물품관리가 체계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연2회 이상) 	재무과
재무 제표	공유재산 관련 프로그램의 연계시스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호조 시스템과 공유재산 프로그램상 재산불일치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확정처리 하여 재산 불일치를 해결 하였으며, 향후 신속한 공유재산 유무 확정 처리로 재산의 불일치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음 ○ 새올시스템의 공유재산관련 담당자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 8. 28 	재무과
성 과 보고서	성과지표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설정 시 사업 중요도, 예산의 비중, 사업운영에 맞는 목표치 설정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검토 반영하겠음. 	기 획 예산과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사업목표(교육환경개선)를 측정 가능한 방법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다음과 같이 개선코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환경 개선지원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의 집행결과 학교 구성원 (교사·학부모·행정실 등)의 만족도로 개선 	교 육 청소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예산성과계획 수립 시 성과목적과 연계된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지표를 설정하여 성과목표 달성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지표 : 보훈문화조성 - 개선지표 : 보훈대상자 지원 - 측정방법 : 지원금액(집행률) 	복 지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사업 목표달성을 위한 정확한 성과 지표로 설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 구체화 :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지원 → 일자리센터 취업실적 건수 	생 활 경제과		

분야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해당부서
성 과 보고서	성과지표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사업 목표달성을 위한 정확한 성과 지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변경 : 서민금융 안정지원 → 금융 종합상담 인원 	사회적 경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출예산 세부사업인 “깨끗하고 쾌적한 동청사관다”는 업무의 명확성이 나타나는 성과 지표라고 사료되며, 사업성과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음. ○ 사업이 다양하여 개별적인 성과측정이 어려움. 측정 산식을 예산집행으로 하되 그 기준 및 목표를 교부된 예산지원액의 90%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자 치 안전과
	목표치 설정의 문제 - 성과계획서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년간 동일한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목표 달성 노력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시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목표치 2,250건으로 수년간 동일. ○ 2018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시 목표달성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반영하여 적절한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하겠음. 	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계획서 목표설정시 향후 우리구 자동차등록대수 및 신축건설, 재개발지역 현황을 파악하여, 좀더 정확한 목표치 설정을 하도록 하겠음. 	교 통 지도과
	사업변경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적절한 조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개편, 사업의 분화 등으로 사업변경이 생겼을 경우 성과보고서의 성과분석 란에 사유 명시하겠음. 	기 획 예산과